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1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원이·조인철·이기헌

박희승 • 신정훈 • 남인순

김남근 · 김선민 · 서미화

박민규 · 장종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에서 섭취할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 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제59조에 제16호의3 및 제1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의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6의4. 제44조의2제2항의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2(과태료)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 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2(먹는샘물등의 이물 발
	견보고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
	자(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
	의 제조업 •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먹는
	<u>샘물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u>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u>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u>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먹</u>
	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 사실을 보고받은 경
	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의2. (생 략) <신 설>

<신 설>

17. ~ 19. (생략) <신 설>

여	필.	요한	조치	를	하	여여	1	한다	<u> </u>
<u>4</u>	제]	1항어	마	른	(٥	물	보	그고.	의
기	준•	대싱	- 및	절.	차	등	케	필.	요
<u>한</u>	사	항은	환>	경부	- 렁	<u> </u>	르	정	<u>한</u>
<u>다.</u>									

1. ~ 16의2. (현행과 같음)

16의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 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 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의4. 제44조의2제2항의 먹는 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7. ~ 19.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과태료) 제44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 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